

2027 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 목 차 ·

I	목 적	1
II	관련 근거	1
III	개 요	1
	1. 적용 기준	1
	2. 용어 정의	2
	3. 특례 대상자 유형	3
	4. 심사 일정	4
IV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5
V	유형별 세부 내용	6
	1. 유형 1(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수한 자)	6
	2. 유형 2-가(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8
	3. 유형 2-나(정부 초청 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12
	4. 유형 2-다(외국인 학생)	14
	5. 유형 3(북한이탈 학생: 국내 중학교 편입자)	17
	6. 유형 4(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자)	19
VI	고등학교 신입학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개선(안) 사전예고	21



붙임자료

붙임 1	(서식)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서류 표지	24
붙임 2	(서식)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원서	26
붙임 3	(서식) 확인서	28
붙임 4	유형별 구비 서류 및 발급처	29
붙임 5	주요 서류 작성 예시	32
붙임 6	상담 시 주요 확인 사항	38
붙임 7	세부 관계 법령	39
붙임 8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41
붙임 9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소	41
붙임 10	주요 질의응답	42



2027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I 목적

고등학교 특례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등학교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II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원정책연구실-848, 2024. 2. 13.)
-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5392, 2026. 3. 30.)

III 개요

1 적용 기준

가.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특례 신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전형: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외국의 학교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 다만,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다.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2 용어 정의

가. 특례입학 전형

- 외국에서 장기간 수학한 학생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전형

나. 재취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55호)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것

다. 편입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55호)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

라.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 국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

마.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체류한 기간

바.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사. 영사 확인

-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아. 아포스티유 확인

-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 ※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31쪽 참고)



3

특례 대상자 유형

구분 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대상자	쪽
유형 1 (정원 내)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유형 2-가 (정원 외)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²⁾ 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8
유형 2-나 (정원 외)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²⁾ 하여 졸업한 자	12
유형 2-다 (정원 외)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²⁾ 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14
유형 3 (정원 외)	제3호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 ²⁾ 하여 졸업한 자	17
유형 4 (정원 내)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19

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

²⁾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함

※ 외국 학교에서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수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취학’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특례 신입학 심사에 한하여 ‘재취학(편입학)’으로 간주함(신입학 제외)



4

심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1차	2차	
서류 제출	2026. 9. 1.(화)	2026. 10. 19.(월)	○ 지원자(유형 1·4) → 교육지원청 ○ 지원자(유형 2·3) → 중학교
1차 검토·제출 (중학교)	2026. 9. 2.(수)	2026. 10. 20.(화)	○ 중학교 → 교육지원청
2차 검토·제출 (교육지원청)	2026. 9. 11.(금)	2026. 11. 5.(목)	○ 교육지원청 → 본청
본청 심사	2026. 10. 1.(목)	2026. 11. 23.(월)	
결과 통보	2026. 10. 7.(수)	2026. 11. 25.(수)	○ 유형 1·4 - 본청 → 교육지원청 → 지원자 ○ 유형 2·3 - 본청 → 교육지원청 → 중학교 → 지원자
제출 대상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신입학 지원자 중 희망자 ※ 단, 과학고, 예술계고(서울 미술고 포함), 서울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자는 1차 심사 신청		○ 지원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차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가. 서류 제출

○ 지원자(특례입학 심사 신청자)는 유형별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유형 1·4: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 유형 2·3: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나. 1차 검토·제출(중학교)

- 중학교에서 서류 확인 및 보완
- 교감 검토 날인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다. 2차 검토·제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확인 및 보완
- 담당 장학사 검토 날인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



라. 본청 심사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류 검토 및 보완
- 검토된 서류를 교육지원청별로 상호 교차 점검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필요시)
- 최종 특례입학 대상자 결정

마. 결과 통보

- 특례입학 대상자 통보

IV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 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유형1, 유형4는 정원 내 선발 • 유형2-가, 유형2-나, 유형2-다, 유형3은 학교별 모집 인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국제·외국어·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 한광고 등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	출신 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 유형 1, 유형 4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특례 대상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에 전원 선발 • 유형1, 유형4는 정원 내 배정(전산추첨) • 유형2-가, 유형2-나, 유형2-다, 유형3은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배정(전산추첨)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제2호에 따라 특례 유형2 및 유형3은 정원 외 선발(배정)

※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의 특례 전형 신입학을 지원하여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은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의 특례 전형, 일반 전형 중 선택하여 신입학 지원할 수 있음



V

유형별 세부 내용

유형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대상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 교육연한과 상관없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2 제출 서류

가.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②~④ 서류: 29쪽 참고)

- ① 심사원서(※ 26쪽 참고)
- ②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는 외국학교 학적서류 원본과 [붙임 3] 확인서 제출(※ 28쪽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해당 학교 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



- 교육부 홈페이지 미공시 학교는 ①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또는 ② 지원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③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④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②~⑤ 서류: 29쪽 참고)

① 심사원서(※ 26쪽 참고)

②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③ 학력 확인서

④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⑤ 학력인정증명서

3 제출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습니까?			3번 질문으로 이동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학교교육을 9년 이상 이수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제출서류	4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5 제출처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41쪽 참조

**유형 2-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가목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대상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은 재취학 포함)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부모는 1년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의 학교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다만,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2년 이상 재학

-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재학기간 필요
-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각각 2개월 이내)에는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축 적용할 수 있음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은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연한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부모의 거주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한부모가족의 학생은 부모 중 1명만 해당

▶ **부모는 1년 이상 체류**

-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학생의 어머니는 국내에 거주, 학생은 학생의 아버지와 해외에서 거주
⇒ 부모 중 한쪽만 해외 거주
- 외국에서 2~4학년, 7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로 편입
⇒ 불연속 3년 미만 재학(초등학교 1~3학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외국에서 4~6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로 편입
⇒ 외국의 중학교 과정 미이수
-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각각 1년 6월 및 10월인 경우
⇒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③~⑦ 서류: 29쪽 참고)

- ① 심사서류 표지(※ 24쪽 참고)
- ② 심사원서(※ 26쪽 참고)
- ③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는 외국학교 학적서류 원본과 [붙임 3] 확인서 제출(※ 28쪽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메인화면: 정책>초·중·고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해당 학교 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

- 교육부 홈페이지 미공시 학교는 ①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또는 ② 지원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④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 최종 재학 학년 및 최종 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외국학교에서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수한 경우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로 같음
- ⑤ 부·모·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⑥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⑦ 부·모·학생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대체 가능 서류(예시)

-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 해당국 영주권,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해당 국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추가 제출 서류(※ ①~④ 서류: 29쪽 참고, 해당 사항만 제출)

- ①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 제3국 수학인정서
- ② 한부모가족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③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④ 재외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3 제출처: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대상	1	<u>외국 소재</u> 학교입니까?		지원 불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지원 불가
	2	외국의 학교에서 <u>2년 이상 재학</u> 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초등학교 1~3학년은 재학기간 불산입
	3	외국의 학교에서 <u>연속하여 재학</u> 하였습니까?		재학기간 불연속 시, 외국학교 재학기간 3년 필요	
	4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u>전학 또는 편입학(재취학)</u> 하여 졸업(예정)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중학교 신입학은 지원 불가
	5	외국의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중 <u>일부를 이수</u> 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6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u>2년 이상 거주</u> 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1명만 해당하여도 지원 가능
	7	<u>부모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u> 이고, <u>체류기간이 1년 이상</u> 입니까? (동시 충족 필요)		지원 불가	
제출서류	8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9	제출처는 <u>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u> 입니다.			



유형 2-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나목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1 대상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은 재취학 포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은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님

2 제출 서류(※ ③~⑦ 서류: 29쪽 참고)

① 심사서류 표지(※ 24쪽 참고)

② 심사원서(※ 26쪽 참고)

③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는 외국학교 학적서류 원본과 [붙임 3] 확인서 제출(※ 28쪽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 해당 학교 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

- 교육부 홈페이지 미공시 학교는 ①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또는 ② 지원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④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 최종 재학 학년 및 최종 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외국학교에서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수한 경우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로 갈음
- ⑤ 부·모·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⑥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⑦ 대한민국 정부 초청서 또는 추천서 사본

3 제출처: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을 받아 귀국한 자녀입니까?			지원 불가	외국 정부의 초청은 지원 불가
	2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u>전학 또는 편입학(재취학)</u> 하여 졸업(예정)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중학교 신입학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3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4 제출처는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2-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다목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1 대상자

-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은 재취학 포함)
- 다만,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 확인
- 이중(복수) 국적을 가진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지원자 성명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 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 외국의 학교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은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번역 공증 제출)



2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③~⑥ 서류: 29쪽 참고)

- ① 심사서류 표지(※ 24쪽 참고)
- ② 심사원서(※ 26쪽 참고)
- ③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는 외국학교 학적서류 원본과 [붙임 3] 확인서 제출(※ 28쪽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해당 학교 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

- 교육부 홈페이지 미공시 학교는 ①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또는 ② 지원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④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⑤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⑥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모와 학생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학생만 제출

나.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외국 학교 재학 전 국내의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29쪽 참고)
 - 최종 재학 학년 및 최종 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제출처: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외국인이십니까?			지원 불가	
	2	<u>이중(복수)국적자</u> 는 이 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u>이중(복수)국적자</u> 가 아닙니까?			“유형2-가”로 이동	“예”일 경우 지원 가능
	3	<u>외국 소재</u> 학교입니까?			지원 불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지원 불가
	4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u>전학 또는 편입학(재취학)</u> 하여 졸업(예정)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중학교 신입학은 지원 불가
	5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u>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까?</u>			지원 불가	
제출서류	6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7	제출처는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1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은 재취학 포함)

2 제출 서류(※ ③~⑥ 서류: 29쪽 참고)

- ① 심사서류 표지(※ 24쪽 참고)
- ② 심사원서(※ 26쪽 참고)
- ③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④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⑤ 학력 확인서: 북한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
- ⑥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3 제출처: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입니까?			지원 불가	
	2	<u>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u> 하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재취학)하여 졸업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3	북한에서 <u>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u> 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제출서류	4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5	제출처는 재학 증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대상자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제출 서류(※ ②~⑥ 서류: 29쪽 참고)**

- ① 심사원서(※ 26쪽 참고)
- ②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③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④ 학력 확인서(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⑥ 학력인정증명서

3 제출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으로 인정받았습니까?</u>			2번 항목으로 이동	
	2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u>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u> 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지원 불가	
제출서류	3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4	제출처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41쪽 참조



VI

고등학교 신입학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개선(안) 사전예고

학교지원과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교육부 고시 제2022-37호)’의 폐지 및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마련된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신입학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개선(안)’을 사전 안내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82조제3항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원정책연구실-848, 2024. 2. 13.)

2

개선 사항

☐ 특례입학 관련 용어 명확화

- 중학교 재취학과 편입학이 동일하게 처리됨을 명시하여 학생, 학부모, 업무 담당자의 혼란 방지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

[참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편입학(의무교육대상자와 아닌 자의 구분 없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무교육대상자(재취학),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편입학)

☐ 특례대상자 자격기준(재취학 시점) 명시

- 중학교 1학년의 수업일수* 3분의 1 이전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입학 간주됨을 명시(특례입학 대상 제외)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경우는 신입학으로 간주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고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 적용예시

※ 수업일수 190일 적용 시

2025. 6. 16.자 재취학(편입학):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 남은 시점, 편입학으로 간주
→ 특례 대상 해당
2025. 3. 17.자 재취학(편입학):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 신입학으로 간주
→ 특례 대상 제외

□ 자격기준 개선(안)

구분		자 격 요 건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경우는 신입학으로 간주함

※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각각 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기대효과

- 편입학 자격기준 및 개념의 명확화를 통한 특례 신입학 업무 관련 혼란 방지



3

유예기간 적용

- 202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까지 유예기간 3년 적용

* 유예 적용 대상: 2022~2024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시점' 까지 중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재취학)한 자

4

향후 추진 일정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사전예고 실시: 2025 ~ 2027학년도
- 2028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반영: 2027. 3월
- 2028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처리지침(안) 확정·배부: 2027. 8월



붙임 1

(서식)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서류 표지(유형2, 유형3)

2027학년도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서류 표지

확인	교 감	장학사
날인		

학 교 명	중학교	성 명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보호자)	(학교)			

구비 서류 해당자별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학생(제2호 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비고
	☐	☐	부모 모두 외국인	부모 1인 이상 내국인	☐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원서	○	○	○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재외 동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대체 서류)	○ (부·모·학생)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부·모·학생)	○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학력 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작 성 방 법

1. 해당자별 해당란(□)에 체크 표시(√) 한다.
2.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되, 불가피한 경우 중학교에서 편입학 배정 당시의 제출 서류(학교보관 분) 일체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3. 외국학교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 상의 성명, 학교명, 입·퇴학 연·월·일(재학기간), 재학 학년(현지 학년으로 표시), 성적(해당 학년) 등에는 적색 볼펜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4. 소속 중학교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각목 해당자별로 구비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서류 표지 상의 ‘○’를 색칠하여 ‘●’ 표하고, 확인 날인란에 날인(서명)한다.
5. 구비 서류는 구비 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되,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서류 표지를 첫 장으로 한다. 구비 서류 중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6. 구비 서류 유의사항
 - 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성적증명서는 학기별 성적 산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는 외국학교 학적 서류 원본과 확인서(붙임3) 제출, 교육부 홈페이지 미공시 학교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나.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 최종 재학 학년 및 최종 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외국학교에서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6.-가. 서류로 대체
 -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유형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부·모·학생 모두 제출, 제2호 다목은 학생만 제출
 - 라.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전 가족 미등재 시 사유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제출
 - 마.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영주권(시민권) 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만 제출
 - 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대체 서류(재직증명서, 여권 등)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없을 경우 외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사. 가족관계증명서
 - 순수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
 - 아. 제3국 수학인정서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에만 제출



붙임 2

(서식)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원서(모든 지원자)

2027학년도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원서						
지 원 자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영문)			연락처	
	주 소					
	학 교	중학교 제3학년 반 번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연락처	
					연락처	
지 원 자 학 력	국내 학력	. . . 까지()학교 ()학년 (졸업·수료·재학)				
	외국 학력	국 가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외국 재학 학년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제2호 각목 해당자만 작성(2-가, 2-나, 2-다 유형)						
국외체류 거주기간	구분	출 국 일 자	입 국 일 자	거 주 기 간	실체류 기간	
	본인	. . .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부	. . .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모	. . .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전·편입학일		년 월 일 중학교 ()학년으로 편입			전·편입학 거	제82조 제3항 제2호()목 해당자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특례 대상자로 심사받고자 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에 의거하여 특례입학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 . . 학 생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OO중학교장 (직인) 또는 OO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작성 방법

1.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기록하고 담임 선생님이 확인한다.
2. 성명은 여권과 동일한 한글, 영문명을 모두 작성한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3. 보호자 성명은 부, 모 모두를 작성하되, 한부모가족 또는 다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연락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자택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4. 지원자 학력
 - 가. 국내 학력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고,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의 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나. 외국 학력의 경우 외국학교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한다.
5. 국외체류 거주기간
 - 가. 거주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 국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 나. 체류기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 내에서 해당 국가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여 작성한다.(다만,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붙임 3 (서식) 확인서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 외국 학교명:

(시트명: , 행 번호:)

위 학생의 특례 신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공시된 엑셀파일에서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명, 시트명(예: 베트남), 행 번호(예: 6행) 반드시 기재



불임 4

유형별 구비 서류 및 발급처

1. 유형별 구비 서류 및 발급처

구비 서류	구 분	유형 1	유형2			유형 3	유형 4	발 급 처
			2-가	2-나	2-다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원서		○	○	○	○	○	○	[불임2] 서식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 및 재학(졸업)증명서		○	○	○	○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	○	(○)			초·중·고교, 교육청 민원실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부24 누리집
가족관계증명서			(○)		○			구청 및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	○		○	○	구청 및 주민센터, 정부24 누리집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부24 누리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재외공관, 재외동포청(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방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인터넷))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서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 모, 학생)		(○)			○		(○)	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부24 누리집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해당 구청, 정부24 누리집, 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 누리집
학력 확인서		(○)				○	(○)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 누리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
학력인정증명서		(○)					○	서울시교육청(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한부모가족증명서			(○)					구청 및 주민센터, 정부24 누리집
혼인관계증명서			(○)					구청 및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

※ 구비서류 중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이트: [불임 9] 참조



2. 외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법

□ 관계 규정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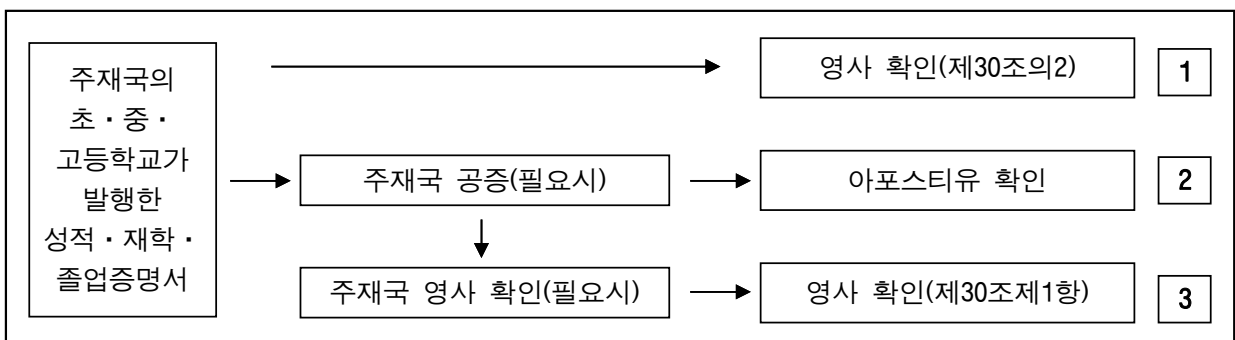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법령 주요 내용

- 외국의 학적서류는 해당 외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할 수 있음(영사 확인)
- 다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외국 공문서 국내 사용법

-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는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학적 서류 국내 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127개국)

(2025. 3. 30. 기준)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즈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협약가입국 갱신 현황 확인 사이트

- ① 헤이그 국제사업회(www.hcch.net) → Apostille → Updated list of Contracting States
- ② 재외동포청(www.oka.go.kr)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 민원업무 안내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 재외동포청 최종 기준일자(2025. 3. 30.) 이후 관련 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 가입국 갱신 현황 등을 모두 반영하여 심사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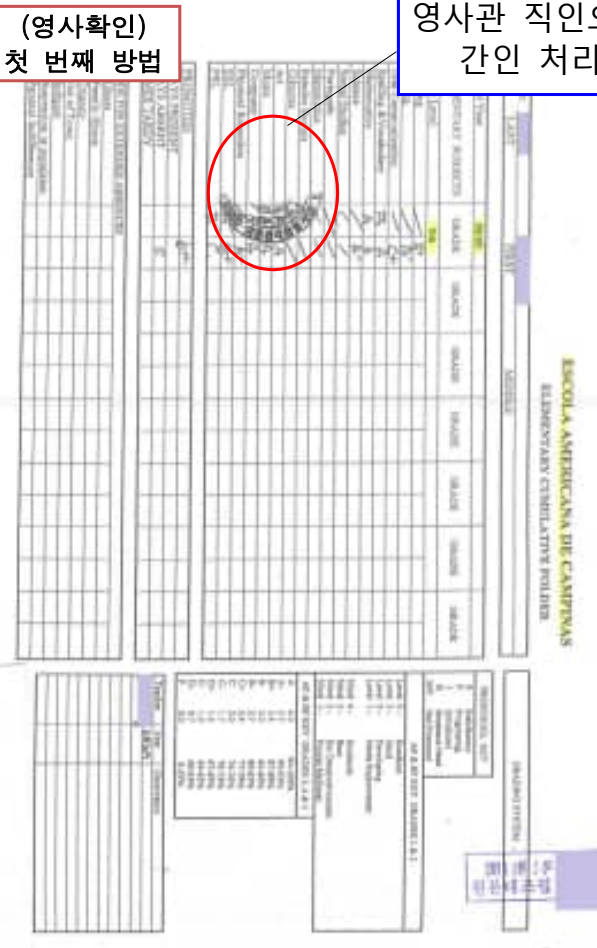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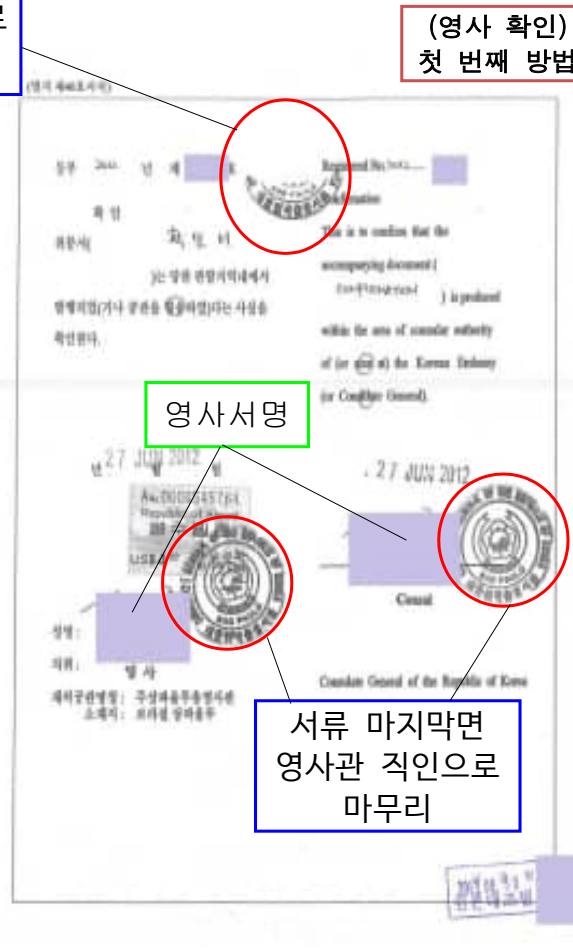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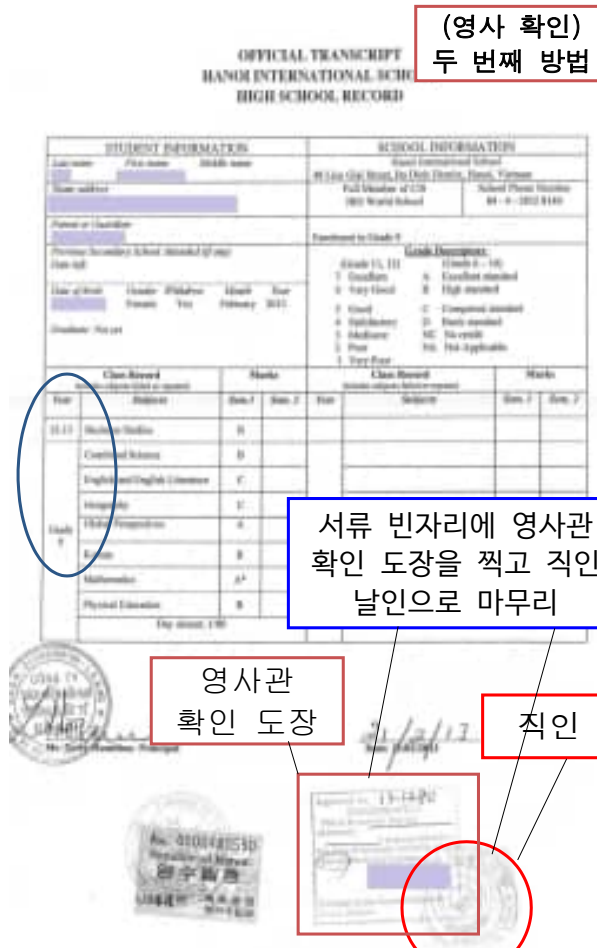
붙임 5 주요 서류 작성 예시

2027학년도 고입전형 특례 대상자 심사원서						
지원자	성명	(한글) 김 영 호	성별	남	생년월일	2011. 08. 26.
		(영문) Kim Yeongho			연락처	010-0000-1111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길 교육아파트 117동 203호				
	학교	서울 중학교 제 3 학년 2 반 3 번				
보호자	성명	김 철 수	관계	부	휴대폰	010-0000-0000
		이 영 희		모	휴대폰	010-1111-1111
지원자 학력	국내 학력	2021. 7. 20. 까지(서울초등)학교 (4)학년 (졸업·수료·재학)				
	외국 학력	국가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외국 재학 학년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	
		중국	0000 학교	2021. 9. 1. ~ 2025. 7. 2. (3년 10개월)	(4 ~ 8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제2호 각목 해당자만 작성(2-가, 2-나, 2-다 유형)						
국외체류 거주기간	구분	출 국 일 자	입 국 일 자	거 주 기 간	실체류 기간	
	본인	2021. 7. 24.	2025. 7. 29.	4 년 개월 6 일	3 년 10 개월 일	
	부	2021. 4. 22.	2025. 8. 7.	4 년 3 개월 17 일	3 년 6 개월 일	
	모	2021. 7. 24.	2025. 7. 29.	4 년 개월 6 일	3 년 10 개월 일	
전·편입학일	2025 년 8 월 9 일 중학교(2)학년으로 편입			전·편입학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가)목 해당자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특례 대상자로 심사받고자 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3에 의거하여 특례입학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 10 . 14 . 학 생 성 명 김 영 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 명 김 철 수 서명 또는 (인)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중 학 교 장 (직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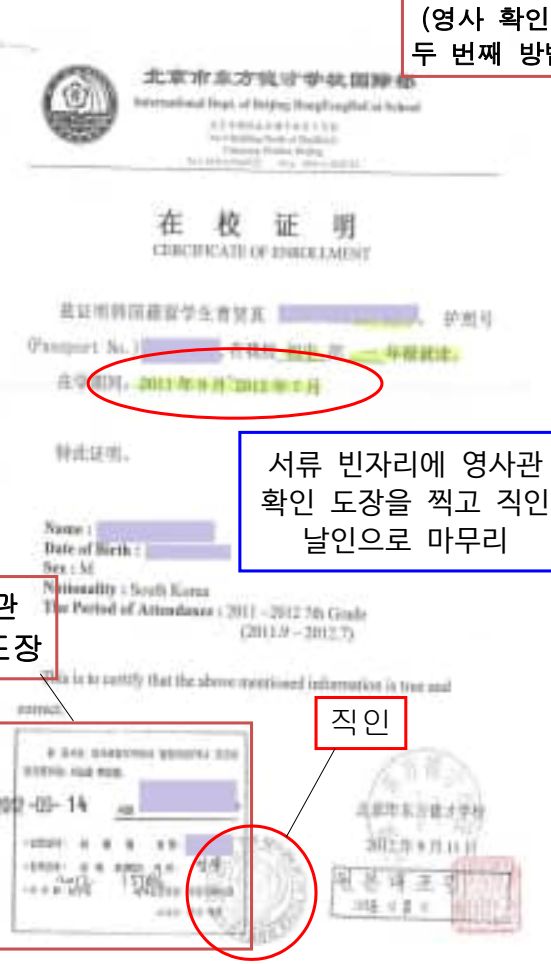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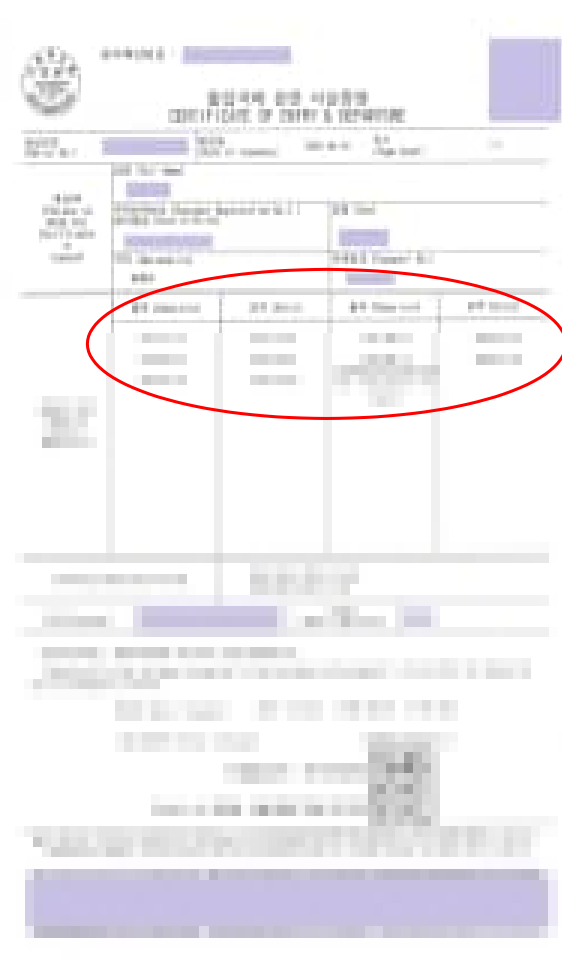


영사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7호 서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 	(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 서류 앞 뒷면 영사관 직인으로 간인 처리 	(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 
확인서 겹표지(법정 양식)	(속지1) ⇒ 2008.8.5. ~ 2012.6.21. 재학증명서	(속지2) ⇒ 6학년~8학년 성적증명서(2009년~2012년)



성적증명서 (영사확인) 첫 번째 방법 서류 앞 뒷면 영사관 직인으로 간인 처리 	영사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40호 서식) (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 영사서명 서류 마지막면 영사관 직인으로 마무리 	영사 확인 (영사 확인) 두 번째 방법 서류 빈자리에 영사관 확인 도장을 찍고 직인 날인으로 마무리 영사관 확인 도장 직인 
(속지3) ⇒ 5학년 성적증명서(2008년~2009년)	확인서 마지막 표지(법정 양식)	성적증명서(2012년~2013년, 9학년)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영사 확인(2가지 유형) 외에 학적서류 국내 사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영사 확인) 두 번째 방법 서류 빈자리에 영사관 확인 도장을 찍고 직인 날인으로 마무리 영사관 확인 도장 직인		
재학증명서(2011.9~2012.7)	아포스티유 협약에 부속된 양식 (1. 국가명 ~ 10. 서명)	체류기간 확인 가능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illegible]

재외동포 자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록 정보	문서확인번호		
	주소여부	등록국	
	등록기관	주: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록일자 2020-05-22
인적 사항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영단위일 및 생일)		
	대한민국 내 등록기관지		
제류국 내 주소 정보	주소 또는 기호		
	별도로 등록된 주소		
세무 정보	최초 입국일	2017-01-14	
	출생지	대한민국	
	거주지	대한민국	
	가족관계	가족관계	
추가 정보	최초입국일	제류국 / 주소	처리일
	제류내역		
	구주소:		
	그 밖의 사항	비고: 학교재학	

위와 내용이 재외국민등록부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제 외 통 포 청

재외동포청
장
장
장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의 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허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 또는 모바일(MaSmartDetector) 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 프로그램: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아래영문 >다문본 >발급사실 진위확인 프로그램 >다문본 앱: 안드로이드(Android) >MaSmartDetector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App Store >maxsmartdetector 앱 다운로드

최초 입국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산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illegible]

가족관계와 외국인 등록 여부 확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학력 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table><tr><td rowspan="3">인적사항</td><td>성명</td><td></td><td>성명</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d>입국한 날짜</td><td></td></tr><tr><td></td><td></td><td>보호종탈일</td><td></td></tr></table> ※ 이 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일 부 장 관 직인 2019년 02월 01일 (일)	인적사항	성명		성명		생년월일		입국한 날짜				보호종탈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4호 (2014. 11. 28.) 발행번호-제 호 학력 확인서 <table><tr><td rowspan="2">인적사항</td><td>성명</td><td></td><td>성명</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d>입국한 날짜</td><td></td></tr></table><table><tr><td rowspan="10">이수 학력</td><td>사학일</td><td>종료일</td><td>학교</td><td>학년</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일 부 장 관 직인 2019년 02월 01일 (일)	인적사항	성명		성명		생년월일		입국한 날짜		이수 학력	사학일	종료일	학교	학년	비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제4호 (2015. 12. 5.)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table><tr><td rowspan="3">교육 지원 대상자</td><td>성명</td><td>북한이탈주민등록번호</td><td>성명</td><td>성명</td></tr><tr><td>생년월일</td><td>생년월일</td><td>성명</td><td>성명</td></tr><tr><td>학교구분</td><td>학교구분</td><td>학교구분</td><td>학교구분</td></tr></table> 주 소 지정내용(대학교) 이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인 2019년 02월 01일 (일)	교육 지원 대상자	성명	북한이탈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학교구분	학교구분	학교구분	학교구분
인적사항		성명		성명																																																																																				
		생년월일		입국한 날짜																																																																																				
			보호종탈일																																																																																					
인적사항	성명		성명																																																																																					
	생년월일		입국한 날짜																																																																																					
이수 학력	사학일	종료일	학교	학년	비고																																																																																			
교육 지원 대상자	성명	북한이탈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학교구분	학교구분	학교구분	학교구분																																																																																				
법정 양식	'2년 이상 재학' 여부 확인 (※ 중학교 과정 일부 이수 여부 확인)	법정 양식																																																																																						



붙임 6

상담 시 주요 확인 사항

1. 학생, 학부모의 국적 및 유형 확인

2.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소재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였는가?

- ⇒ 부모: 거주기간 2년 이상 & 실체류기간 1년 이상 / 학생: 거주기간 & 재학기간 2년 이상
- ⇒ 해당국에 학생만 유학했거나 부모 중 1명만 함께 거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다만, 한부모가족의 학생은 부모 중 1명과 함께 출국한 경우도 해당됨
(사례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유형 1 및 유형 4 해당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상관없음
- ⇒ 부·모·학생의 동일국 거주 여부 확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의 재외국민등록 국가 일치 확인)

3.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충족되는가?

- ⇒ 외국학교 전체 재학기간이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인지 확인
- ⇒ 나라별 학제가 다르므로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의 일부 이수 여부 확인
- ⇒ 전체 재학기간 중 편성된 학기를 완전히 이수하였는지 확인
- ⇒ 재학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라도 이수 학기수가 충족되면 가능함
(예를 들어, 재학기간이 1년 11개월이고, 1년 2학기제인 나라에서 총 4학기를 이수했다면 인정)

4. 유학 전 최종 학년과 학기, 외국학교 편입 학년과 학기

- ⇒ 국내 학교와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연속성 확인
- ⇒ 학교 소재지(국가) 확인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 재학한 외국학교의 학제 편성 확인(봄/가을학기제, 학년 구성 등)

5. 귀국 후 서울 소재 중학교 편입 여부

-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학생이 상담일 현재 외국에서 재학 중인 경우, 귀국 시기를 확인하여 중3 편입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일반고 편입을 원할 경우 서울시교육청 귀국자 편입학 담당 부서(총무과 민원실) 안내

6. 제출 서류 확인



붙임 7

세부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제82조(입학전형방법)

-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7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붙임 8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연번	자치구	교육지원청	주 소
1	동대문구, 중랑구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전농로 168
2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3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문래로 121
4	노원구,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 노해로 313
5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 대학로 10
6	강동구, 송파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 잠실로 26
7	강서구,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구 월정로 269
8	강남구, 서초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9	동작구, 관악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 장승배기로10가길 35
10	성동구, 광진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고산자로 280
11	성북구, 강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솔매로50길 65

※ 유형 1, 유형 4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붙임 9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소

구 분	누리집 주소
정부24	https://plus.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재외동포 365만원포털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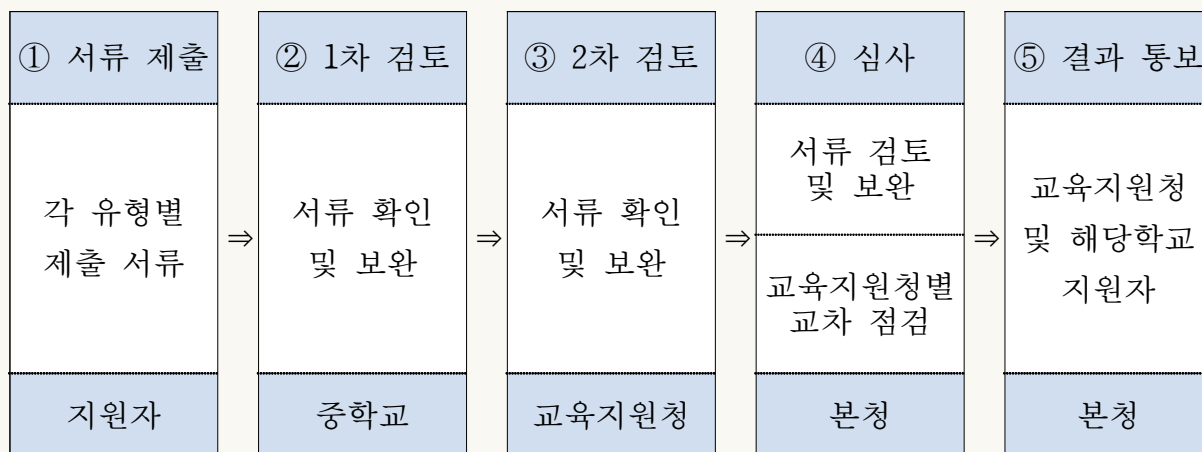
붙임 10 주요 질의응답

공통 질의응답

01. 특례입학이 무엇인가요?

-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일반 학생과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례 대상자는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외국인 학생·북한이탈 주민 학생 등으로, 동 제도의 취지는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문화적 차이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형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내의 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등 해당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반 학생의 고입 전형은 중학교 성적 등으로 실시하지만, 특례 학생은 중학교 성적 외의 별도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특례 대상자 중 전기고등학교 및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중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전원 선발하며, 유형 1, 유형 4는 정원 내 전산추첨 배정,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 2-다, 유형 3은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전산추첨 배정합니다.

02. 특례 대상자 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03.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대체 가능 서류(예시)

-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 해당국 영주권,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해당 국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4.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대상자의 경우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치나요?

-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진학 시 특례입학 대상자(특례 심사 통과자)는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합격 처리 후 배정됩니다.
-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특목고, 자사고 등)는 특례전형이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에서 특례전형 불합격 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특례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05. 특례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전기 고등학교에 특례로 지원하여 불합격한 경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특례 지원이 가능한가요?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경우 이중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특례 대상자 심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례 대상자 심사 없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특례 신입학 지원도 가능합니다.



06. 중학교에 편입학이 아닌 재취학한 경우 특례 유형 2, 3번에 해당하나요?

- 중학교에 재취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특례 유형 2, 3으로 특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07. 현재 중3으로 특례 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례가 아닌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특례입학 자격 심사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특례입학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특례 대상자로 적격심사를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특례입학 전형 또는 일반 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08.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을 했고, 중학교 졸업 후에 특례입학 대상자 조건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례입학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 고입 전형 특례 대상자는 특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례입학 대상자가 학교장 선발 전·후기 고등학교(과학고, 특성화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 진학을 원하면 해당 고등학교에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격자는 해당 학교의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선발합니다.
-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면 출신 중학교를 통해 고입 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유형 1 및 유형 4는 정원 내 전산추첨 배정, 유형 2 및 유형 3은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전산추첨 배정됩니다.

09. 귀국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입학전 배정으로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 입학전 배정 대상

-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예정자가 거주지 변동 등의 사유로 재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입학 전에 배정

- 따라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이후 귀국자는 입학전 배정 대상이 아니며, 1월 귀국을 예상하시면 3월 입학식 이후 귀국자 편입학 등에 대해 인근 고등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지난해에 특례 심사를 받아 특례 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올해 다시 고입 특례에 지원할 수 있나요?

- 특례 신입학은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지원 하지 않았다면 아직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올해 고입 특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작년에 합격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신입학 할 경우에는 특례 입학은 불가하며 일반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외국인의 경우 한국 주재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외국 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한국 주재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문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국가의 한국공관 영사 확인을 추가로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외국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특례 대상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발하며, 학교별 특례 전형 지원율을 알 수 있나요? 일반 전형보다 특례 전형이 유리한가요?

- 특례입학 대상자는 대상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선발(배정)합니다.

구 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유형1, 유형4는 정원 내 선발 • 유형2-가, 유형2-나, 유형2-다, 유형3은 학교별 모집인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 한광고 등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	출신 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 유형 1, 유형 4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특례 대상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에 전원 선발 • 유형1, 유형4는 정원 내 배정(전산추첨) • 유형2-가, 유형2-나, 유형2-다, 유형3은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배정(전산추첨)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 전기 및 후기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며 학교별로 정원 및 지원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율에 대해서는 해당 고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어느 전형이 합격에 유리한지 학교별 지원율로 판단하기보다는 학교별 특례 전형의 심사 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시어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질의응답

13.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9월에 귀국했는데, 고등학교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 때문에 고입 특례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14. 중국에서 입양한 자녀이고 현지에서 9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고등학교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유형 2-가 질의응답

15.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고등학교 특례 입학할 수 있나요?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내 학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졸업하신다면 중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취득하신 후 국내 고등학교에 일반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16. 외국에서 5학년 1학기부터 7학년 1학기까지 약 2년 6개월간 재학하다가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 하였습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 위 학생은 재학 및 거주기간은 충족되나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을 하였으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 외국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다시 외국학교에서 7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 고입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학하여야 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비연속 3년 이상(초4~5학년, 중1학년)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18.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초등학교에서 졸업 후 다시 출국하여 7학년을 1년 다녔습니다. 외국 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인데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하고,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에 초등학교 1~3학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이나, 고입 특례 시 인정하는 재학기간은 7학년인 1년뿐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국내에서 3학년까지 재학한 후 외국에서 4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다시 출국하여 외국학교에서 7학년을 다녀 총 2년 동안 외국학교를 재학했습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비연속적이면(공백이 있으면) 총 3년의 재학기간이 필요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으므로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4학년과 7학년 각 1년씩 총 2년을 이수했으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1년 2학기제 외국학교에서 총 2년(4학기)을 이수하였지만, 총 재학기간은 1년 11개월 15일입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학생의 재학기간을 계산할 때는 역년(Calenda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고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학년(Academic year)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위 학생은 재학기간 2년에 15일이 부족하지만 총 4학기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2년을 재학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21. 재학기간 2년 이상이라는 규정보다 기간이 조금 부족해도 특례입학 대상에 해당하나요?

- 외국학교의 입학 수속예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미달인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각각 2개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체류 기간은 단축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외국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4학년부터 7학년까지 4년간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특례 편입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 특례입학 대상자는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를 인정합니다.
- 따라서 위 학생은 중학교에 특례 편입학을 하였지만,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의 자격(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23. 외국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했습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고입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학제로 계산하여 중학교 과정이 일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과정만 이수했기 때문에 고입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외국학교의 어학원 과정에 6개월을 다닌 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로 입학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총 2년을 재학했습니다. 어학원 과정도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나요?

-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은 외국에 소재한 정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재학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학원 과정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학생은 외국에서 2년을 거주했지만, 실제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25. 학생 혼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특례 입학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려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하여 졸업해야만 합니다.
- 위의 경우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한부모가족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부모 중 1인만 학생과 동행하였어도 부모가 모두 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 학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학생이 외국에 있는 학교의 방학 기간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간 경우 거주기간에서 한국 방문 기간을 제하고 계산을 하나요?

- 거주기간은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을 말합니다. 거주기간 중 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방문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27.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학생이 부모 거주국과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 학생은 동일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이 되나 예외적으로 부모 거주국의 지역·종교·국제 정세 등의 특성상 동일 국가에서 재학이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3국에서 재학한 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제3국 수학인정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28.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 2년간 재학을 하고, 이후에 아빠는 외국에 남아있고 학생과 엄마는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례 자격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귀국 시까지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라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 귀국과 무관하게 특례입학 대상에 해당합니다.



29. 엄마만 학생과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아빠는 국내에 있었던 경우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외국에서 부모와 2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을 했을 경우에 특례 자격이 주어 집니다.
- 위 학생의 경우,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1인만 외국에 거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혼인관계 증명서 등 구비 서류 제출). 또한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중도에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거주기간에 포함이 되며, 한부모가족이 된 시점부터는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30. 특례 심사 당시(9월) 외국 거주기간이 부족하지만, 내년 2월쯤에는 특례를 위한 외국 거주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 대상이 되나요?

- 특례 신청자는 심사 당시 법령에 구비된 요건(거주·재학·체류기간 등)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학생은 특례 신입학 대상은 안 되나, 3월 초 입학식 이후의 특례 편입학 대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례 편입학은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1.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학교에서 2년간(5, 6학년) 재학하였고, 이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 혼자 남아 7학년을 마쳤습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례 대상 학생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에는 중학교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중에 외국학교의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학생은 고입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형 2-나 질의응답

32.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과학기술자의 자녀이고, 외국에서 9년 재학 후 귀국하였습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닌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했으므로 유형 2-나로 특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외국에서 9년 재학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추어 유형 1로 특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2-나 질의응답

33. 전 가족이 외국 국적을 소지하였습니다. 학생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재학하였고,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인데,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외국인 학생이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함)
- ‘외국의 학교’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뜻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가 아닌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를 재학한 것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중국인 학생이 외국에서 8학년까지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여 중3에 편입한 후, 얼마 전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국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상실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학생 및 부모의 국적에 따른 특례 대상 여부는 학생의 국내 중학교 편입 시점 및 부모의 귀국 시점에서의 국적, 해외 실거주 기간, 귀화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5. 현재 한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복수국적자인 경우 한국 고등학교에 특례로 신입학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특례 신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특례 대상 학생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36. 외국 소재 학교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학교(제주국제학교 및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용산 미군기지 내 학교 등)는 특례입학 요건의 외국학교에 해당하나요?

- 외국학교는 「중·고등 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에 따라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미군기지 내 학교 등은 국내에 소재한 학교이므로 외국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 3 질의응답

37.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 후 서울 소재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면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 ‘2년 이상 재학’ 시 반드시 북한에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학력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1~4학년 과정만 이수하였다면 중학교 과정을 미이수한 것이므로, 유형 3에 대한 특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 4 질의응답

38. 학력 확인서와 학력인정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학력 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이수한 최종학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는 증명서로 심의를 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담당



기타 전·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담당부서

- 교육감 선발 후기고 : 학교지원과 (☎6033-6319~23)
- 영재학교 및 과학계열 : 창의미래교육과 (☎6033-5711, 5714)
- 외국어·국제·예술계열 및 자율형 사립고 : 중등교육과 (☎6033-5874, 5877)
-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진로직업교육과 (☎6033-6135)